

##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51호  
개정 2005. 10. 5 규칙 제46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제2조(허가신청 등)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서 첨부 위원장이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면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4조(대장비치) 위원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1. 사용허가 시설명 :

2. 사용허가 목 적 :

3. 사용허가 기 간 :     자     년     월     일     시부터  
                          자     년     월     일     시까지

4. 사 용 료 :

5. 허 가 조 건 :

- 1) 복지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3)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복지회관운영위원회위원장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사용불허가통지서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명 :

2. 사용허가 목 적 :

3. 사용허가 기 간 :

4. 불 허 가 사 유 :

1)

2)

3)

4)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 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복지회관운영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사용료면제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체명 :
2. 사용 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사유 :
6. 기 타 :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복지회관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